

기관명

수 신

(경유)

제 목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.

차별대우 시정요구서				
취업지원 대상자	보훈번호		5·18민주유공자 와의 관계	
	성명		생년월일(성별)	()
	주소			
	근무부서	직종	직급 등	채용일 또는 고용일
시정요구 사항				
붙임: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(서식) 1부				
※ 유의사항 : 위 시정요구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이며,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				

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 (직위/직급) 서명

검토자 (직위/직급) 서명

결재권자 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

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

우

도로명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